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가정방문형 급여]

2025. 10.



부당사례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B가 수급자 A에게 202*.**. ~ 202*.**. (총**회) 기간 동안 매주 1회 방문요양서비스 태그시작 전송만 하고, 서비스 시간에 외출, 종료전송을 하지 않으나 요양보호사 C가 B를 대신하여 태그종료 전송하여 급여제공 일수·횟수를 늘려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 받음.

적용
기준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사실대로 급여제공기록지(RFID포함)에 작성(전송)하고, 이를 근거로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해야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19.) ~ 제2023-289호(2023.12.19.))
- －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8조(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본 자료에 표기된 '법(시행령·시행규칙)'은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의미함.

2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부당사례1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프로그램 관리자가 고시 제17조 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으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여 지급 받음.

부당사례2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가 고시 제17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것으로 등록 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

부당사례3

○○○○보호센터는 5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외에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하여 해당 월은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없음에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

적용
기준

고시 제17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 제19조 제14항, 프로그램관리자가 고시 제17조 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19.))
- －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당사례1

○○방문요양기관은 특정 수급자에게 2시간 방문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급여를 제공했으나 방문간격을 둔 것으로 태그를 전송하거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비용 청구하여 지급 받음.

부당사례2

○○○○복지센터는 수급자 A에게 요양보호사 B는 202*.*.**. ~ 202*.*.**.까지 개인간병과 혼용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방문간격을 두고 1일 2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태그를 전송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

적용
기준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제1항에 따라 1일 2회 이상 급여비용을 산정 할 경우 방문간격을 2시간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함.
한편, 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29.))
 -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당사례

○○방문요양기관은 특정 수급자에게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을 하여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급여제공 시간 내에 방문한 것으로 시간을 직접 입력 후 청구하여 지급 받음.

적용
기준

고시 제57조에 따르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하며, 제2항 급여관리 업무란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말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29.))
- －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부당사례

○○○○복지센터의 종사자 A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간을 월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

적용
기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실 근무하여야함. 지정받지 않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한 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제외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29.))
- 제48조(인력배치기준),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제50조(근무인원), 제51조(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